

▶ 특별강연-IX

IFOAM과 국제유기농인증제도

천 경 욱

글로벌유농인 국제유기농인증기관 대표이사

1997년 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 및 공포된 이래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과 수요는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여왔다. 200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농산물 대비 시장 점유율은 약 5%정도이다. 세계 유기농 시장도 400억 달러(약40조)의 엄청난 규모의 생산 및 유통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유통은 유기인증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선도되어왔다. 우리나라로 금년 3월에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국제규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가공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 및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국제 규격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증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인증제도 개선 및 정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1. IFOAM의 설립 배경

1964년경 프랑스에서 농민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협회가 유기농업단체로서 널리 알려진 자연과 진보(Nature et progres)이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유럽 여러 국가들 중에서 농업 생산수준이 낮은 나라였으나 70년에 이르면서 상당한 진보를 나타냈는데, 화학비료 사용량의 증가, 기계화, 품종개량 등을 통하여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생산량의 증대를 위한 전세계적인 일련의 노력

으로 인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개발하고 또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야기된 땅의 오염, 환경의 폐해를 막아보고자 농민과 일부 소비자들이 주축이 되어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자연과 진보의 회원은 약 6천명, 그 중 약 8백명은 순수한 농민이며 기타 학자나 연구자들이 소수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소비자들이다.

파리 근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 협회의 활동 중 유기식품 표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되어 1년이 지나면 유기농업 생산물로 인정하는 본부 마크의 표시 사용권을 제공한다.

협회 조직 초기에는 순수한 농민들 중심으로 올바른 농산물을 생산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운동을 시작한 일이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소비자층의 관심유도 및 인지도 확대 등의 어려움이 수반되었지만 1972년도 11월에 총회를 갖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적 연대를 갖기 위해 약 30개국의 호응을 받아 유기농업국제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나라마다 자생되어 활동하고 있는 유기농업운동과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공동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유기농 생산 정보와 재배기술의 교류하여 유기생산을 범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셋째 유기농 생산 및 관리 제도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각국의 유기농산물 재배현장을 견학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유기농업의 국제활동을 위하여 연구기구를 설립 및 확대하도록 한다.

이 조직이 국제유기농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Movement, IFOAM)으로 이름을 바꾸고 매 3년마다 IFOAM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120여 개국에서 750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IFOAM 총회의 본부는 독일 본에 설치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6개 기관에서 IFOAM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글로벌유농인도 2005년 5월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으며 2006년 11월에는 IFOAM으로부터 국제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전 세계 35개 IFOAM국제유기농인증기관 중 하나가 되었으며 2007년 8월에는 ISO9001지정요건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연합의 인증기준인 EU Reg.2092/91기준과 글로벌유농인 인증기준의 동등성이 입증되어 글로벌유농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은 유럽 27개국에서도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5인의 IFOAM창설 대표자를 소개하면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의 대표적인 로랜드 쉐브리오, 영국의 토양협회 대표 래디 이브 발파워, 스웨덴의 생물기능학협회 대표 크젤 알만, 남아

프리카 토양협회의 폴린 라파엘리, 미국 로데일 농장과 출판사의 대표 로데일 등이다.

2. IFOAM 유기농의 원칙

첫째 원칙은 건강으로써 유기농은 땅, 식물, 동물, 인간, 지구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은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이 결코 환경의 건강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한 흙이 동물과 인류의 건강을 조성하는 건강한 식물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건강이란 삶의 전체성이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생태학적 참살이의 유지를 의미한다.

둘째 원칙은 생태계로써 유기농은 생태계와 순환, 이들과 공동 작용, 경쟁, 공존의 상호 협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은 살아있는 생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원칙은 공정성으로써 유기농은 보편적인 환경과 삶의 기회에 기인하여 공정성을 보장하는 관계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넷째 원칙은 보호로써 유기농은 현재와 미래세대 및 환경의 건강과 참살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책과 책임있는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3. IFOAM의 목표

IFOAM은 전세계의 유기농 운동을 이끌고 유기농 세계를 연합하며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섯가지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 e.g.: 허용자재 제조 및 허용 원칙
 - ㄱ. Necessity (수확량, 품질, 환경안전성, 생태계보호, 주변경관, 동물복지)
 - ㄴ. --Nature
 - a. Organic
 - b. Mineral
 - Mode of Production
 - a. Michanical
 - b. Physical

- c. Enzymatic
 - d. Action of Micro organism
 - e. Chemical
 - Collection
 - a. 자연 서식처 영향이 없어야 한다.
 - b. 채집지의 종을 유지하여야 한다.
 - f. Environment
 - a. Environment Safety (환경파괴, 지표, 지표수, 공기, 흙, 제조과정 검증 및 평가)
 - b. 화학합성 제품과 증금속의 식품 잔류
 - c. 생물분해성(Degradability)
 - d. 비선택성 유기체에 미치는 심각한 독소
 - e. 장기 지속성 독소
 - g. 인류의 건강과 제품의 질(Carcinogen, Teratogen, Mutagen, Neurotoxin 사용 금지)
 - a. 무해원칙
 - b. 위해요소 감소의 원칙
 - h. 윤리적 측면 - 동물 복
 - i. 사회 경제적 측면
 - a. 농자재 사용을 통한 유기생산품에 대한 소비자 반대 지양
 - b. 환경, 인류건강에 대한 소비자 고려
 - c. 자재가 유기제품 새안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GMO)
- 1) 유기농 운동을 위한 세계적 플랫폼을 설립한다.
 - 2) 유기농 원칙을 개발하고 지지한다.
 - 3) 유기농 채택 지지 및 지원한다.
 - 4) 유기농 시장 개발을 향상시킨다.
 - 5)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보증한다.

4. IFOAM 의 활동

- 1) IFOAM Norms 제정 (ISO 65에 근거해서 IAC 평가요건 제정)

- 2) 회원제 운영으로 3년마다 정기총회 개최
- 3) 1992년 IFOAM 총회에서 Accreditation Program launching
- 4) 1997년 IOAS를 설립하고 Accreditation Program을 일임
- 5) IFOAM SC에서 Norms를 검토 및 개정 혹은 보완
- 6) IFOAM Organic Guarantee System 운영
 - a. 제도의 공통 규격화, 검증, 판매정보 일원화 등을 추진하여 유기농 세계를 연합
 - b. 유기 완정성의 국제적 보증
 - c. IOAS와 IFOAM Accredited CB가 OGS의 핵심 요소
- 7) IFOAM의 기구
 - a. IFOAM World Board
 - b. Committees - The Development Committee
 - The program Strategy Committee
 - The Norms Management Committee
 - The Standards Committee
 - The Criteria Committee
 - c. Task Forces - Definition of Organic Agriculture
 - IFOAM Statutes Revision
 -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 d. 특정분야
 - 가. IFOAM Aquaculture Group
 - 나. IFOAM Forum of Consultants
 - ㄱ. 유기농운동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네트워크 형성
 - ㄴ. 유기농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기관에서 활약하는 회원 중심
 - ㄷ. 효과와 전문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에 목표를 둠
 - 다. IFOAM Organic Retailers Association
 - ㄱ. 소비자에게 질 좋은 인증품 제공에 목표를 둔 소매상 협회
 - ㄴ. 소분업 기준 제정 및 준수
 - ㄷ. 회원간의 정보교류 등등
 - 라. IFOAM Organic Trade Forum

- ㄱ. 유기농무역 증진
- ㄴ. B to B 협력 증진
- ㄷ. 상도 증진
- ㄹ. IFOAM 내 무역업 종사회원 개발을 통한 회원가입 유도
- ㅁ. ACBs MLA(Multilateral Agreement)
1998 안 제정, 1999년 6월 Miami에서 제1차 연례 모임 개최

5. IOAS의 설립 및 활동

1) IOAS의 설립 배경

- a. IOAS는 1997년에 설립하여 Delaware, USA에 등록된 비영리 기구
- b. IOAS는 1992년에 IFOAM Accreditation Program을 제정하고 1994년에 IFOAM Accredited CB가 최초로 탄생.
- c. 1997년에 IOAS가 설립되면서 IFOAM에서 진행하던 Accreditation Program을 IOAS로 이양함

2) IOAS의 목적

IFOAM Accreditation Program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되었음

3) IOAS의 활동

- a. IFOAM Norms - IFOAM Basic Standards
IFOAM Accreditation Criteria를 평가
- b. ISO/IEC Guide 65 -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 c. EU Regulation No. 2092/91등과 같은 유기농기준 준수 확인

6. IFOAM Norms

1) 신청요건

IFOAM유기농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각종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IFOAM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되 인증을 받고자 하는 포장은 최소 36개월 이상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해마다 유기농산물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매년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전환기간

유기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경종, 유기축산 모두 전환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유기경종은 최소 36개월 이상 금지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기축산은 각 축종별로 전환기간을 거쳐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으며 목초지는 경종의 전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품종을 유기 및 비유기로 병행생산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나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고 수확 직전에 추가 심사를 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수확에 대한 명확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완충지대

유기적으로 경영된 농장이 금지물질 및 오염가능지역과 근접해 있다면, 생산자는 유기생산계획에 오염방지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계획에는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완충지대 확보 혹은 경계막 설치, 방풍림과 같은 물리적 방어막 설치 등 의 계획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하며 완충지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유기인증생산물로 팔 수 없다.

4) 윤작 및 생물의 다양성

재배포장에 인정하여있는 산울타리, 원시림, 습지와 같은 지역에 유익한 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도록 한다. 다년생 작물 농장 및 포장에는 다양한 품종을 도입하도록 권유한다.

생산자는 토양비옥도와 유기물질 함량 증진 및 유지, 일년생 및 다년생 작물의 해충 관리, 영양결핍 혹은 영양과잉 관리, 그리고 침식방지를 위하여 녹비작물, 두과식물, 심근성 작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농작물을 윤작하도록 한다.

5) 토양비옥도 및 작물영양 관리

토양 비옥도의 개선과 유지를 위해 금지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토양 개량제는 토양, 수질 및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 되어야 하며 사용농자재의 양, 지역, 시기, 처리, 방법 혹은 사용 자재의 선택 등이 규제대상이 된다. 토양 비옥도의 유지, 개선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토양의 현 상태를 개선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고 토양 및 용수 내의 염류집적 방지 계획 수립 둘째, 식물 영양, 병원 조직체, 중금속 그리고 사용 금지된 잔류 물질에 의한 농작물, 토양, 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토양 내 유기물질 함량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동식물성 자재 관리 계획.

- a. 공장형 축분은 농장에 사용할 수 없다.
- b. 거름이 부숙 되지 않았을 경우, 식용 작물이 아닌 피복작물이나 기타 작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c. 인분(똥, 오줌)을 포함한 분뇨는 식용작물에는 사용이 금지 된다.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이나 해충, 기생충 등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그 사용 방법이 금지물질을 포함하는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에 예외가 허락 되어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축분은 인증농가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하며 비유기농장에서 유래된 축분은 분석을 하도록 하며 하수처리장의 폐기물은 사용할 수가 없다.

6) 병해충 방제 및 잡초 방제

병해충 및 잡초방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방제 할 수 있다.

- a. 작물의 적절한 윤작
- b. 녹비, 휴경, 윤작 등을 통한 잡초의 성장억제.
- c. 적절한 품종의 선택
- d. 기계적 경운
- e. 화염제초
- f. 모판 준비
- g. 멀칭 및 예치
- h. 포식동물 및 기생동물을 포함한 천적의 방사
- i. 가축 방목

- j. 돌가루, 농장거름에서 유래된 생물학적 조제품 혹은 식물
- k. 알맞은 서식처 제공을 통한 해충 천적의 보호
- l. 덫, 올타리, 빛, 소리 등과 같은 기계적 통제
- m. 병해충을 퇴치하기 위한 토양 열소독의 사용은 규제하도록 한다.
- n. 지역 토착 동식물, 미생물로 자가 제조한 병해충 및 잡초방제 생산물은 위의 방법으로 충분히 방제가 되지 않을 때 사용을 허용 될 수 있다.
GMO 혹은 GMO에서 유래된 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농작물 잔사를 처리할 목적으로 태우는 행위나 기름 혹은 화학 작용에 의한 제초제, 살충제 등을 사용할 수가 없다.

7) 용수

유기작물에 사용되는 관개용수에 어떠한 금지물질도 고의적으로 첨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잔류오염으로 인해 함유하게 된 용수 내 금지물질량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이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농작물 세척 혹은 수확 이후 사용되는 물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농인 인증기관이 용수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하며 염소의 농도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국내 인증제도와 국제 인증제도 비교 및 개선 방안

1) 일련의 유통경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인증제도 구축의 필요

- a. Traceability, Chain of Custody, Farm to Table, Audit Trail
 - b.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 행정 및 인증업무의 일원화
 - 유기식품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아래에서 획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 인증기관을 통해서 생산, 가공, 취급 전 과정의 심사 및 관리
- Farm to Table 일련의 전체 취급과정 심사 체계화 (chain of custody)

2) 인증기관 지정기관, 감독기관, 인증업무시행기관의 역할 분리

- 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Guidelines, IFOAM Norms, ISO 65 Guidelines 등에서와

같이 분리가 바람직

- b. 민간인증기관이 활성화, 전문화, 객관화, 공정화 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

3) 인증제도의 획일화

- a. 농관원 일변도의 업무지침 하달 (수입사료심사, 규정위반자 기준)
- b. USDA NOP, EU Regulation 2092/9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대한 하한선 마련

4) 인증기관의 동등성 인정

- a. 타 인증기관의 사전 인증을 인정해주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
- b. 인증기관 간의 자유경쟁은 필요하지만 최소의 업무협조는 필요
중복인증자의 TC, 인증부적격자, 인증취소자 등의 부적격, 취소 등의 이유와 같은 최소
한의 정보는 공유필요
- c. 사전인증 용인에 대한 기준조항 삽입 의무화 및 MLA 가입

5) 인증기관 운영의 현실화

- a.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 b. 인증제도 홍보 부족
- c. 인증 및 관리 제도의 현실화 (예시, Italy 인증기관 19개, 인증건수 5,500건 중 CCPB에서
3,500건 인증, 중국의 집단농장 체제 인증)
- d. ICS(Internal Control System) 및 내부심사제도
- e. SC, AC, CC, 심사팀 운영의 현실화를 통한 인증기관의 전문성, 국제화
- f.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6) 허용물질 목록표 및 허용 농자재 인증제 및 허용제

- a. IFOAM의 경우 농자재 인증제와 허용제 관련 기준마련 요구

7) 인증기관의 공정성 및 객관성

- a. 인증기관 모체의 유통, 농자재 시판 금지

- b. 인증기관의 Guidelines 제시와 컨설팅 금지
- c. 인증업무의 분리(취급자 인증심사보고서의 적합, 부적합 판결 란)

8) 인증제도의 국제규격화 및 국제인지도 획득

- a. IFOAM, 미국에서는 인증제도위원회 운영
- b. 친환경농업육성법 중에서 유기인증제도의 국제규격화
- c.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국제인지도 획득 노력 필요

9) 문서관리, 기밀유지등의서, 이권불가입선언서 서명 등

10) 위험요소 평가기준(risk assessment)과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assessment)

8. 친환경농업육성법, IAC, EU Reg. ISO65 관련규정 비교

주 요 내 용	한 국 (친환경육성법)	일 본 (JAS)	미 국 (NOP)	호 주	Codex	IFOAM	EU	ISO65
인증권한 부여/연장/갱신/정지/취소 책임 소재	○ (정지/농관원)	○	○	○	○	○	○	○
인증업무 공정성(객관성)	○	○	○	×	○	○	○	○
인증기관 Marketing 행위	×	×	○	×	×	○	×	○
인증 심사/심의/청원업무 구분 명시	정부 × 민간 ○	×	○	×	×	○	×	○
컨설팅 금지 명시	○	×	○	×	×	○	×	○
심사원의 Advice 금지	정부 × 민간 ○	×	○	×	×	○	×	○
인증 심사/심의/청원참여자의 이권 불개입 규정	정부 × 민간 ○	○	○	×	×	○	×	○
인증기관 재무구조 평가	×	×	×	×	×	○	×	○
전문인력(심사원) 조달	○	×	○	×	○	○	○	○
인증업무 및 인증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 (청원기준)	×	○	○	×	○	×	○
기관/심사원 기밀유지규정	정부 × 민간 ○	○	○	×	○	○	○	○
심사원의 심사기피	정부 × 민간 ○	×	×	×	×	○	×	○
GMO	○	○	○	○	○	○	○	○
Transaction Certification	×	×	×	×	×	○	×	○
표시기준	○	○	○	○	○	○	○	○
인증권한의 정지, 취소에 관한 규정/처리절차	○	○	○	×	○	○	○	○
자재 사용기준 및 인증제도	○ (인증×)	○	○	○	○	○	○	○
타 인증기관 인증 농산물 인정에 관한 규정	국내 ○ 국외 ×	×	○	×	×	○	○	○
타 인증기관 인증자 용인에 관한 규정	국내 ○ 국외 ×	×	○	×	×	○	○	○
인증기관 유효기간	5년	5년	5년					

9. 친환경농업육성법, IAC, EU Reg. ISO65 인증제도 비교

주요내용	한국 (친환경육성법)	일본 (JAS)	미국 (NOP)	Codex	IFOAM
인증 주체	정부·민간	민간	주정부·민간	언급없음	언급없음
인증 대상	농산물(축·임)	농산물·가공품	농산물·가공품	농산물·가공품	농수산물·가공품
인증 신청	생산자, 수입자, 취급자	생산자, 수입자, 취급자	생산자, 수입자, 취급자	생산자, 수입자, 취급자	생산자, 수입자, 취급자
인증종류	3종류(무·저농약 포함)	유기	유기	유기	유기
표시규정	인증을 받은 자만 표시가능	인증을 받은 자만 표시가능	인증을 받은 자만 표시가능	인증을 받은 자만 표시가능	인증을 받은 자만 표시가능
수수료	건당 5만원+출장비	건당 229천엔+출장비	건당175\$+매출액0.5~1.0%	자율	자율
인증 유효기간	유기 1년(무·저 2)	1년 단위 검사	1년 단위 검사		1년 단위 심사
전환기간(경종)	유기(다년생 3년, 기타 2년)	다년생 3년 기타 2년	3년전부터 금지물질 사용금지	다년생 3년 기타 2년	3년간 금지물질 사용 금지
전환기간(축산)	한우 : 12개월 산란계 : 5개월	육우 : 12개월 산란계 : 6주	육우/포유1/3기간부터 산란계/부화직후	육우 : 12개월 산란계 : 6주	육우 : 12개월 산란계 : 6주
공장형 축분	사용가능	합성물질 첨가금지	사용가능	사용금지	언급없음
농약잔류	제한적 허용(1/10)		안전기준 1/10이내	언급없음	언급없음
GMO 종자	사용금지	사용금지		사용금지	사용금지
GMO 사료	사용금지	사용금지		사용금지	사용금지
유기사료 급여비율	80%이상	100%	100%	80%이상	90%이상
유작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재사용 규정	Codex 같음	Codex 유사	Codex보다 세분화		Codex 같음
토양, 용수 등 검사	의무		심사원판단		
야생식물 규정	3년간 허용자재이외의 자재가 사용되지 않을 것		수확직전 3년간 금지물질 미사용	채집전 3년동안 금지물질 미사용	경종 유기전환기준에 준함

용어 및 해설

1. IFOAM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2. OGS - Organic Guarantee System
3. IOAS - 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 Inc.
4. 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5. ISO/IEC Guide 6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6. IFOAM Norms - IFOAM 규정집 IBS 와 IAC
7. IBS - IFOAM Basic Standards IFOAM 총회에서 제정된 유기생산과 가공에 관한 국제 기준
8. IAC - IFOAM Accreditation Criteria IFOAM 이사회에서 제정된 유기농 심사 및 인증에 관
한 기준